

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 20일  
전문위원 서 선 옥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28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6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재난, 필수노동자, 필수업종, 대면업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적용대상을 규정함(안 제4조)

- 마. 필수업종 선정,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바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사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아. 서울특별시 강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자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21. 2. 17. ~ 3. 9.) 결과: 의견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  - 3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  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유지를 위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부득의 대면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로
    - 재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<sup>1)</sup>에 따른 재난
    - 필수노동자: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
    - 필수업종: 재난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<sup>2)</sup>

1)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

2) 필수업종 예시(정부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·지원 대책 중) : 보건·의료, 돌봄업무, 택배·배달, 환경미화, 대중교통, 여객운송 등 - 재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- 대면업무: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생명·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, 지역공동체 유지,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강서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음.
- 안 제5조는 실태조사로 필수업종 선정,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**개별조항 검토 (안 제5조)**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되며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
  -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 - 필수업종 지정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
  -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(임의규정)
-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
  -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
-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-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**개별조항 검토** (안 제6조)

- 강서구에서는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, 필수노동자 문화 및 건강강좌, 필수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‘강서구 노동복지센터’에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

- 안 제8조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항으로

-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
-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

- 위 내용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두되, 그 역할을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음.

**개별조항 검토** (안 제8조)

-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 그 구성원은
  1. 강서구의회 의원
  2.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
  3. 노동분야 정부기관, 노동단체,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
  4.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(조례 제16조), 그 성격이 유사하고 필수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심의·자문의 역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    - ※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2021년 중 구성예정

-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주민

의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‘필수노동자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으나

-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득의한 대면업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.
-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·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,
- 향후, 이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음.

※ 「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 중

- 2020년 9월 서울시 성동구에서 「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한 이래 서울특별시(2021. 1월 시행)를 비롯한 9개구<sup>3)</sup>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,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.
-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,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,
-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위원회 구성 등 후속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3)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노원구, 동대문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성동구, 성북구 (2021.3월 현재)

**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**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

**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**

**제15조(설치 및 기능)**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·자문



2.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·자문
3.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·평가
4.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, 정책에 대한 자문
5. 그 밖에 노동자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

**제16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, 구 노동관계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1. 강서구의회 의원
2.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
3. 노동분야 정부기관, 노동단체,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
4.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